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5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99.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가. 제안이유

○ 우수한 신기술, 아이디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 벤처 창업자들에게 유희공공시설공간, 공동장비,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진을 위하여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유치(안 제3조제1항)

○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을 정함(안 제4조)

○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안 제5조제1항)

○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안 제6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스독옵션제란 무엇입니까?	○ 보증금, 임대료 등을 주식으로 대체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p>○ 벤처기업에 저렴하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p>	<p>○ 국·공유재산관리법에는 임대료를 50/1000, 벤처기업법에는 10/100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의 1/2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한다면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p>
<p>○ 상공인한테 위임하면 어떻습니까?</p>	<p>○ 시의 예산을 들여 자본을 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해야 합니다.</p>
<p>○ 운영위원회에 상공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p>	<p>○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상공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6. 2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우수한 신기술, 아이디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 벤처창업자들에게 유희공공시설공간, 공동장비,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유치(안 제3조제1항)
-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선정방법을 정함(안 제4조)
-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안 제5조제1항)
-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안 제6조제1항)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유치) ①부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부천시지역 안에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①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하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업체는 제외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시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제6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 ①시장은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입주부담금) ①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중 일부를 스톡옵션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 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